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2. 제정이유
 ○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 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 ○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3조～제14조)
 ○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～제17조)
 ○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～제24조)
 ○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4. 참고사항
 ○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
 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 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 [기획감사실-2445(2019.8.23.)]
 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 [가족지원과-33842(2019.8.21.)]
 ○ 입법예고 : 2019. 9. 12. ~ 2019. 10. 4.

5. 검토의견
 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개발사업과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,
 ○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,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, 운영협의회와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